

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에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중소기업은행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)729-6114

자산보관·관리내역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(결산)

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제1호 (주식)

삼성중소형FOCUS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Class A, Class Ae, Class C1, Class C2, Class C3, Class C4, Class C5, Class Ce, Class Cf, Class Cw, Class S, Class S-I

나. 분류 :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

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4.09.10. ~ 2015.09.09.

라. 집합투자업자 : 하나UBS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 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NH투자증권, 부국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토러스투자증권, 엘아이지투자증권, 비오에스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, 비엔지증권, 흥국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, 삼성화재해상보험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신한은행, 제주은행, 수협은행, 한화생명, 삼성생명, 미래에셋생명, 펀드온라인코리아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5.06.09.	클래스 신설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생략 신설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생략 13. S-I 클래스 수익증권
2015.07.31.	모자형으로 변경 등	제1조(목적 및 종류 등) ②(생략) 국내 중소형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[주식]이다. (생략) 신설	제1조(목적 및 종류 등) ②(생략) 국내 중소형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[주식] 이다. (생략) ④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.

※금융투자협회 공시 참조 (<http://work.kofia.or.kr>)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5.07.31.	말소	윤상아	-	2109001812

※금융투자협회 공시 참조 (<http://work.kofia.or.kr>)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일시	안건	집합투자증권 총수	출석 의결권수	결의결과
해당 없음				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주식을 계열회사(투자중개업자)를 이용하여 거래한 적이 있으나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 허용된 거래임을 확인하였습니다.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한영회계법인	1년	374만원	서면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.
- 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-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.
- 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 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.
- 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발생일	법령/감독 규정/약관	규제항목	한도	편입비	해소일
해당 없음					

- 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 사항 없습니다.
- 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* 본 항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신탁업자의 확인 사항에서 제외 합니다.

8. 법 제89조 수시공시 사항

- ☐ 소규모 펀드공시(펀드규모적정화)
 - 해당 사항 없습니다.
- ※금융투자협회 공시 참조 (<http://work.kofia.or.kr>)

☐ 그 외 공시 사항

공시 일자	공시 사항	주요 내용	비 고
2014.11.19.	투자설명서 변경	재무정보 확정에 따른 변경 등	
2015.06.09.	집합투자계약 등 변경	클래스 신설 등	
2015.06.09.	투자설명서 변경	클래스 신설 등	
2015.07.31.	집합투자계약 등 변경	모자형으로 변경 등	
2015.07.31.	투자설명서 변경	모자형으로 변경, 운용역 변경 등	
2015.08.17.	투자설명서 변경	자투자신탁의 추가 등	

9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☐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☐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☐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종료(결산)에 따라 작성 합니다.

서울시 중구 을지로 79



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권선주

